

북·일 수교회담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 과거청산문제를 중심으로

유의상 _ 동북아역사재단

목 차

- I. 서론
- II. 과거 북·일 수교회담에서의 과거청산문제 협의 결과
- III. 한·일 관계와 북·일 관계의 정합성문제
- IV. 과거청산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일 수교회담 전망
- V. 한국의 대응전략

국문초록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북·일 수교회담 재개가 예상된다. 북한 핵문제 및 일본인납치문제가 선결된다면 수교회담의 핵심의제는 과거청산이 될 것이다. 북·일 양국은 2002년 9월 ‘평양선언’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 및 사죄표명과 함께 일본의 대북경제협력, 청구권 상호포기 등 과거청산에 관해 한·일 회담과의 정합성이 유지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남은 과제는 경제협력의 규모와 ‘명분’을 정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개인청구권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는 것이다. 북한이 ‘보상’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쉽지 않은 교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일 회담 재개 시 한국에서도 미해결 과거사문제의 청산요구가 커질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후일 한·일 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과거를 청산토록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일 국교정상화 계기 한국, 북한, 일본 3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일본의 한반도전체에 대한 식민지배 반성과 사죄가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과거청산을 위한 기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주제어

북·일 수교회담, 식민지배청산, 한·일 청구권교섭, 경제협력, 한·일 회담
과의 정합성

.....

I . 서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실험 등으로 긴장과 대립이 계속되던 한반도 정세가 2018년 2월 개최된 ‘평양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한국과 북한 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이더니 4월 27일 및 5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의 센토사(Sentosa)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북·중간에도 3월 말 이후 정상들이 세 차례나 만났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유독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하며 한반도문제에서의 소외(Japan Passing)를 자초한 일본도 결국에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일 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인납치문제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든, 아니면 양국이 스스로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북·일 간에도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2006년 이래 중단상태인 수교(국교정상화)회담이 곧바로 재개될 것이다.

새로운 한반도정세하에서 재개되는 북·일 수교회담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이전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교섭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북한이 개혁·개방노선을 취하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중국의 자본이 북한에 유입되어 그들의 경제개발을 돕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이 경제적인 압박으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진다.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따라, 일본과 미해결과거사 문제를 외교현안으로 안고 있는 한국이 북한의 우군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그간 대북교섭에서 효과를 발휘해온 북한의 핵문제라는 협상지렛대(leverage)를 상실한 상태에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

북·일 수교회담이 재개되고 양국 간에 과거 식민지배 청산문제에 대한 교섭이 다시 본격화되면, 한국에서도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개정 등 과거사청산을 위한 요구가 다시 대두될 것이다. 한국정부로서는 그동안 한·일 관계를 고려하여 과거사문제에 다소 애매하게 대처해 왔으나, 북일 교섭이 재개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애매함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도 북·일 수교회담 재개를 계기로, 한·일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반도정세 변화에 즈음하여, 앞으로 재개될 북·일 수교회담에서의 과거청산관련 교섭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예측하고, 한국정부가 미해결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교섭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선 기존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과거 북·일 수교회담에서 이루어진 과거청산관련 교섭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북·일 수교회담에 관한 연구는 교섭의 쟁점과 전망,¹⁾ 한·일 회담과 북·일 회담의 상관관계,²⁾ 교섭 타결이 가져올 지역정

1) 이원덕, 「북·일 수교 전망과 주요현안」,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61호, 2002; 권태환,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협상 동향」,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

세 변화에 대한 예측³⁾ 등을 주제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한·일 회담과 북·일 회담을 연계한 연구결과를 주로 참고할 것이다. 이어 일본이 한·일간 합의와의 정합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집요하게 주장해온 ‘청구권/경제협력’의 과거청산방식이 과연 북한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공개된 한·일 회담문서기록의 분석을 통해 점검해 볼 것이다. 이 점검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기존연구들과는 다른 관점 즉, 북한이 일본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교섭에 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북·일간의 과거청산 관련 교섭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예측해 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해결 과거사문제 청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 과거 북·일 수교회담에서의 과거청산문제 협의결과

1. ‘평양선언’ 이전의 수교회담

1990년 9월 24일~28일간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실력자 가네마루

구』 1(0), 2003; 遠藤哲也, 「日朝關係と國交正常化問題の現状と展望」, 聖學院大學總合研究所, 『聖學院大學總合研究所紀要』 53, 2012.

- 2) 서동만, 「한·일 기본조약과 ‘조·일 수교교섭’의 상관관계」, 장달중·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편, 『한일공동연구총서 7』, 아연출판부, 2004. pp. 117~141; 김용복, 「한·일 회담의 경험과 북·일 수교회담의 전망: 공개된 한일협상자료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11, 2006; 이원덕, 「한·일 기본조약과 북한문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2), 2010.
- 3) 박정진, 「북·일 관계의 구조와 변화전망-65년 질서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연구학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2(0), 2015; 박정진, 「북·일 스톡홀름 합의 재론: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19, 2016; 박창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북·일 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 ‘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외교교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KWP』 31(2), 2015.

신(金丸信)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사회당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냉전 붕괴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리쿠르트 정국돌파)과 북한(경제난 극복)의 국내적 필요성이 결합되면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다. 가네마루 일행은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 후, 북한 노동당과 함께 '3당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선언에는 과거 식민지시대 36년과 전후 45년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⁴⁾ 양국 간의 조속한 국교수립, 하나의 조선 인정, 1990년 11월 북·일 수교교섭 개시 등 획기적인 내용들이 담겨졌다.⁵⁾ 북한외교의 승리로 간주될 수 있는 이 선언은 북일 수교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에 대해 강한 자세로 나오는 배경이 되었다.⁶⁾ 이 선언에 따라 북·일간에 1990년 11월~12월 세 차례의 예비회담을 거쳐 1991년 1월 30일~31일간 평양에서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1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 의제는 ① 북·일 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문제(구 조약의 합법성, 관할권의 범위 등), ② 북·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제 문제(북한은 전전·전후 45년 배상·보상으로, 일본은 청구권문제로 주장), ③ 북·일 국교정상화와 관련된 국제문제(북한의 핵사찰문제), ④ 기타 쌍방이 관심을 가지는 제 문제(재일조선인 법적 지위, 일본인 배우자문제 등)였다.⁷⁾ 의제에 양국관계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북한의 핵사찰문제'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국제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4) 이 선언에는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명기되었다. 북한은 이후에도 일본에 대해 '보상'을 요구해 왔다. 법률적으로 '배상'과 '보상'은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로 피해를 당한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통상 피해를 야기한 원인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배상', 원인행위가 정당하거나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본의 식민통치가 불법이라는 점에서 '보상'보다는 '배상'이 적합한 단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다유익상,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역사공간, 2016, p. 13).

5) 「김일성·가네마루 회담 공동선언 전문」, 『중앙일보』, 1990. 9. 29.

6) 서동만(2004), p. 131.

7) “日朝, 國交正常化へ1月から本交渉 第1回は 平壤で 豫備會談合意,” 『朝日新聞』, 1990. 12. 17, 夕刊. 각 의제별 괄호 안 항목 중 일부는 박정진(2015), p. 537 참조.

북한은 제1차 회담(1991년 1월 30일~31일)의 제2 의제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자 '3당 선언'을 근거로 일본에게, ① 교전국간의 배상청구권(과거의 일본과 조선인민 관계를 교전관계로 인식), ② 식민지와 중주국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 ③ 전후 45년간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일본은 조선의 분열에 책임이 있으며, 미 침략군의 보급, 수리, 공격기지 역할 수행, 6.25전쟁 이후 적대정책 실시로 정치·경제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 발생, 보상 미지불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였다.⁸⁾ 이에 대해 일본은 재산·청구권문제는 미해결상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과 전쟁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배상과 보상은 전혀 인정할 수 없으며, '3당 선언'은 일본정부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응하였다.⁹⁾ '3당 선언'에서의 합의내용을 곧바로 부정해 버린 것이다.

일본이 이같이 대응한 이유는, 일본 국내적으로도 '3당 선언'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식민지 지배 사과 및 보상', '하나의 조선' 등 한·일 협정의 틀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¹⁰⁾ 북·일 수교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 입장 설명 차 1991년 1월 9일~10일간 방한한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총리에게 노태우 대통령은 "북·일 관계의 진전이 남·북한 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¹⁾ 일본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 수교회담 개시 전 북·일간에 수립되는 관계는 한·일 회담과의 정합성을 유지함으로써 한·일 우호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립하고 회담에 임하였던 것이다.

8) 서동만(2004), p. 136-137; 이원덕(2010), pp. 221~222; 「戦後の償いで対立 北朝鮮, 核査察でも譲らず 日朝政府交渉」, 『朝日新聞』, 1991. 1. 31, 朝刊.

9) 「日朝国交正常化交渉での中平大使の冒頭発言 要旨」, 『朝日新聞』, 1991. 1. 30, 夕刊.

10) 「방북 가네마루 발언내용 정부, 일본에 해명요구」, 『한겨레신문』, 1990. 9. 28.

11) 「日朝交渉, 核査察重点に 海部首相が韓国大統領に表明 第1回会谈」, 『朝日新聞』, 1991. 1. 10, 朝刊.

1. 조·일(朝·日) 국교정상화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
2. 조·일 국교정상화가 한·일의 우호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3. 일본에 의한 식민지통치 36년간에 관해서는 성실히 대처하지만, 전후 45년간의 '보상'에는 응하지 않는다.
4.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북한 핵사찰 수용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요하다.¹²⁾

제1차 회담부터 시작된 양국 간의 과거청산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제4차 회담(1991년 8월 30일~31일)까지 계속되었다. 북한은 제3차 회담(1991년 5월 20일~22일)에서 관할권과 역사인식에 관한 '기본문제' 토의를 우선함으로써 양국 간의 국교수립을 우선 타결 짓고 보상과 핵사찰 등 다른 의제는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절하였다.¹³⁾ 제5차 회담(1991년 11월 18일~20일)에서 과거청산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이 교전국 간의 배상과 전후 45년 피해 보상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불법적인 식민통치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사상범)의 검거, 투옥, 학살, 수백만 청년의 징용·징병, 정신대 강제연행, 조선의 천연자원과 재화 수탈 등)에 대한 보상만을 주장한 것이다.¹⁴⁾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이 거세지는 등 국제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면서 고립감이 심해지자 일본과의 수교교섭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교섭전략을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제6차 회담(1992년 1월 30일~2월 1일)에서 북한은 보상요구목록에 일

12) 서동만(2004), p. 131; 박정진(2015), p. 537; 「日韓友好に配慮など4項目の方針 2回目は3月, 提案へ 日朝交渉」, 『朝日新聞』, 1991. 1. 26, 朝刊.

13) 서동만(2004), p. 131; 「'外交関係樹立優先を' 核査察など先送り日朝交渉で 北朝鮮提案」, 『朝日新聞』, 1991. 5. 21, 朝刊.

14) 「'加害者として償いを' 北朝鮮, 日本に総反論 日朝交渉」, 『朝日新聞』, 1991. 11. 19, 夕刊.

본군'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면서, '위안부'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이며, "정치적, 물리적 책임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¹⁵⁾ 1992년 1월 11일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관리, 통제에 직접 관여했음을 확인해 주는 공식 문서가 일본방위청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¹⁶⁾ 이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일본은 한·일 관계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미야자와 기이치(宮沢喜一) 총리가 1992년 1월 16일~17일 방한 시 '위안부'문제에 관해 표명한 반성과 사과 내용을 북한 측에 소개하면서, 이 반성과 사과의 대상에 북한도 포함된다는 뜻을 밝혔다.¹⁷⁾ 그러나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제7차 회담(1992년 5월 13일~15일)에서 '위안부'문제도 재산·청구권의 범위 내에서라면 검토,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함으로써 따로 보상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¹⁸⁾

회담은 북한 핵문제와 '이은혜 문제'¹⁹⁾를 둘러싼 대립격화로 1992년 11월 제8차를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1999년 12월 일본의 초당파 의원단단장: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 방북을 계기로 7년 반 만에 재개되었다. 2000년 4월 5일~7일 개최된 제9차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이 핵문제, 일본인납치문제를 우선 협의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자 과거청산

15) 서동만(2004), p. 138.

16) 「慰安所への軍関与示す資料 防衛庁図書館に旧日本軍の通達・日誌」, 『朝日新聞』, 1992. 1. 11, 朝刊.

17) 「従軍慰安婦で謝罪表明 '補償'は進展なし 第6回日朝交渉終了」, 『朝日新聞』, 1992. 2. 2, 朝刊.

18) 「北朝鮮がプルトニウム抽出認める 第7回日朝国交正常化交渉」, 『朝日新聞』, 1992. 5. 15, 朝刊.

19) 대한항공기 폭파 주범 김현희는 1988. 1. 15 사건 수사결과 발표 시 자신의 일본어 교관이었던 이은혜가 일본인이라고 밝혔으며, 1991. 5. 16 기자회견에서 이은혜가 다구치 야에코(田口八中子)라고 확인하였다(『동아일보』, 1988. 1. 16 및 1991. 5. 17). 일본은 제3차 북·일 수교회담부터 이 문제를 '일본인납치문제'로 규정하고, 북한 측에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를 먼저 거론하면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있어 과거청산이 불가결한 것이며 인적·물적 손실에 대해 피해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보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1995년 8월 15일)에 담긴 ‘반성과 사죄(お詫び)’²⁰⁾의 뜻을 표명하였지만, 과거청산은 청구권에 관해서만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²¹⁾ 제10차 회담(2000년 8월 22일~24일)에서 일본은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경제협력방식’의 과거청산을 제안했다.²²⁾ 제11차 회담(2000년 10월 30일~31일)에서도 북한의 보상요구와 일본의 ‘청구권/경제협력방식’ 과거청산 주장이 대립하는 구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2. 북·일 정상회담에 따른 ‘평양선언’과 그 이후의 수교회담

2년여의 공백 끝에 북·일 양국은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ARF 회의를 계기로 2002년 7월 31일 외상회담을 개최하고, 이어 8월 25일~26일간 수교회담 재개를 위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북한방문이 전격적으로 합의되었다.²³⁾ 국내여론의 악화로 일본인납치문제 해결이 시급했던 일본정부와,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북한 측의 이해가 합치되면서 이루어진 합의였다. 고이즈미는 2002년 9월 17일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평양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는 ① 국교정상화 조속 실현을 위한 수교교섭 재개, ② 일본의 식민

20) ‘お詫び’는 ‘사죄와 ‘사과’의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필자가 임의로 ‘사죄’로 번역하였다.

21) 「日本と北朝鮮の国交正常化交渉での主張 要旨」, 『朝日新聞』, 2000. 4. 6, 朝刊.

22) 「過去の清算 経済協力で 日本, 北朝鮮に提示 正常化交渉」, 『朝日新聞』, 2000. 8. 25, 朝刊.

23) 「小泉首相, 来月17日訪朝 金総書記と会談へ 国交正常化前進狙う」, 『朝日新聞』, 2002. 8. 30, 夕刊.

지배 사과, 경제협력 약속, 재산 및 청구권 상호포기, ③ 국제법 준수와 상호안전 불위협 및 일본인납치문제(선언에는 “일본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현안문제”로 표현)²⁴⁾의 재발 방지 확인, ④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 ⑤ 핵, 미사일 등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 대화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이 선언은, 그간 북·일 교섭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본인납치문제와 북한 핵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북한이 인정하였다는 점과 함께, 과거청산관련 쟁점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점을 찾고, 향후 추가교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평양 선언’의 과거청산관련 내용(제2항)은 다음과 같다.

일본 측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인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事實)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お詫び)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 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국교정상화 이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공여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고, 또한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국제협력은행에 의한 융자, 신용공여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합치된다는 기본 인식하에 국교정상화교섭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 규모나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함에 있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한 양국 및 그 국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국교정상화교섭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24) 일본 측이 확인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는 총 17 명이다. 생존 납치피해자 5명은 2002.10 일시 귀국하여 북한에 돌아가지 않았다. 북한 측은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12명 중 8명은 사망하였으며, 4명은 북한에 입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측은 사망자 8명의 사망원인, 사망확인서 등을 일본 측에 제공하였으나 일본 측은 이를 수용치 않고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 홈페이지, <http://www.rachi.go.jp/>(검색일: 2018. 4. 5)].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재일조선인의 지위에 관한 문제 및 문화재의 문제에 관해서 국교정상화교섭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²⁵⁾ [인용자 번역].

우선, 이 선언에는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반성과 사죄가 명기되었다. 제9차 수교회담에서 북한이 국교정상화 전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일본정부 최고책임자의 사죄가 명기되어야 한다고 주장²⁶⁾한 것을 일본이 수용한 것이다. 내용은 일본이 수교회담 중 언급하였던 ‘무라야마 담화’²⁷⁾나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 간에 1998년 10월 8일 작성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담긴 표현과 거의 같다. 이는 일본이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면서도 한국을 의식하여 한·일 관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²⁸⁾

두 번째로, 일본이 북한에 대해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경험의 구체적 규모나 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무상자금협력, 저금리차관공여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동일하나, 북한의 식량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25)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日朝平壤宣言’, http://www.mofa.go.jp/mofaj/kaidan/s_koi/n_korea_02/sengen.html (2018. 4. 12 검색).

26) 「日本と北朝鮮の国交正常化交渉での主張 要旨」, 『朝日新聞』, 2000. 4. 6, 朝刊.

27)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로 되어있다(외교부, 『일본개황』, 나무와 숲, 2015, p. 213).

28) 박정진(2015), p. 545; 김태운, 「북한의 대일정책 변천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7(2), 2004, p. 123.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오부치 총리가)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이 선언에서는 お詫び를 사죄로 번역하는 것을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양해하였다”로 되어있다(외교부(2015), p. 213).

방식'의 과거청산을 주장해온 일본 측 주장이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일본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협이 구체적 규모와 내용을 추후 협의대상으로 미룬 점이나, 경협이 '명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핵심내용이 빠진 '미완성 합의'다. 경협이 규모는 한·일 간의 선례(무상제공 3억 불, 유상차관 2억 불, 상업차관 3억 불 이상)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협의에서 이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협이 '명분'이다. 한·일간에는 일본이 제공할 금액과 제공방식에 합의하고서도 한국이 이 자금에 '청구권'의 명분을 부여하는 것조차 일본이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2년 반 이상 교섭의 타결이 지체된 바 있다. 북한은 2006년 2월 개최된 제 13차 수교회담에서, '평양선언'에 따라 '경제협력방식'의 일괄적 과거청산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경협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협이외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본이 의도하는 과거청산방식에 제동을 걸었다.²⁹⁾

세 번째로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향후 교섭에서 구체 협의키로 하였다. 한·일간 교섭 경협을 교훈으로 삼아 북·일 양국이 청구권 대 역청구권 논쟁 가능성을 큰 틀에서 사전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달리 북한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b)항(일본이 미군정의 남한 내 구 일본재산 몰수와 한국이양 조치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인정한 조항)³⁰⁾이 적용되지 않아 전후 구 일본재산 취득을 정당한 행위로 주장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청구권 상호포기를 먼저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

29) 「過去の清算, 深い溝 日本「経済協力方式」で 北朝鮮は「別の補償も」国交正常化交渉, 『朝日新聞』, 2006. 2. 7, 朝刊.

30) 조약 제4조 b)항은 "일본은 미군정의 지령에 따라 처리된 일본과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조치를 인정한다"로 되어있다("Treaty of Peace with Japan, Sept 8, 1951", UCLA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Documents*).

다. 다만, 이 부분도 북한이 향후 교섭에서 한·일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하여 강제동원 피해, 원폭 피해 등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포기대상에서 제외코자 할 경우 교섭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한국이 2005년 8월 한·일 회담문서를 공개하자 북한은 “문서들은 회담 당시 남조선 통치배 들이 심지어 개인청구권과 일본군'위안부' 피해보상마저 포기한 사실을 날날이 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³¹⁾

‘평양선언’에 따라 2002년 10월 수교회담(제12차)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회담은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한 대립과 함께,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인정한 납치피해자 8명의 사망원인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의구심 증폭으로 곧바로 중단되고 말았다. 1년 반 후인 2004년 5월 22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고이즈미가 평양을 다시 방문하였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평양선언’에서의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재확인하였으며, 고이즈미는 납치피해자 가족 8명 중 5명과 동반 귀국함으로써 수교회담 재개의 전기가 다시 마련되었다.

제2차 북·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납치문제관련 실무협약이 2004년 8월~11월간 세 차례 개최되었으나, 요코다 메구미(横田めぐみ) 등 납치피해자 8명의 사망 진위여부 등을 둘러싸고 또 다시 양측 간에 진실공방만이 전개되었다.³²⁾ 이후 실무접촉을 계속해 오던 양국은 그간 협상대상이었던 현안을 아예 ① 일본인납치문제, ② 북한 핵 및 미사일등의 안전보장문제, ③ 식민지 지배에 관한 과거청산을 포함한 국교정상화문제로 분리하고, 이 세 가지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는 방식의 회담을 2006년

31)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변인 담화, 2005. 9. 3(김용복(2006), p. 191에서 재인용).

32) 「北朝鮮「横田さんの遺骨」政府代表団が持ち帰り、DNA鑑定へ」, 『朝日新聞』, 2004. 11. 16, 朝刊. 일본이 제3차 실무협약(2004. 11. 9~14)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요코다의 유골은 DNA 검사결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 났다(「遺骨、めぐみさんと別人 政府、DNA鑑定で結論 北朝鮮側立致」, 『朝日新聞』, 2004. 12. 9, 朝刊).

2월 4일~8일간 개최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이 회담을 ‘제1차 일·조 포괄 병행협약’이라고 부르고 있으나,³³⁾ 언론들은 제13차 수교회담으로 인식하였다.³⁴⁾ 이 회담에서 북한이 과거청산관련 경제협력 이외에 별도 보상을 요구하였음은 앞서 기술한 대로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일본의 대북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수교회담은 재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간에 실무접촉은 이어졌다. 2014년 5월 29일 양국은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진 뒤, ‘평양선언’ 재확인, 일본의 대북한 제재 해제 및 북한의 일본인납치문제 재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스톡홀름 합의’를 발표하였다.³⁵⁾ 그러나 일본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자 이에 반발한 북한이 ‘납치자문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중단(2016년 2월)³⁶⁾함에 따라 양국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교회담도 재개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Ⅲ. 한·일 관계와 북·일 관계의 정합성 문제

앞 장에서 살펴본 대로 일본이 그간 개최된 북한과의 수교회담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북·일 간에 수립되는 관계는 한·일 회담을 통해 구축된 한·일 관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정부의 요청과 견제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북·일 관계가

33)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第1回日朝包括並行協議(2018. 4. 12 검색).

34) 「溝, 埋まるか 日本, 経済支援テコに迫る 日朝交渉きょう再開」, 『朝日新聞』, 2006. 2. 4, 朝刊.

35) 「拉致再調査 日朝合意 政府, 開始後に制裁解除 北朝鮮, 特別委設置へ」, 『朝日新聞』, 2014. 5. 30, 朝刊.

36) 「北朝鮮 ‘拉致調査を中止’ 制裁に反発, 特別委解体を宣言」, 『朝日新聞』, 2016. 2. 13, 朝刊.

한·일 관계보다 ‘우월하게’ 수립될 경우 한국 측의 한·일 협정 개정요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한·일/북·일간 정합성은 한·일 간에 청구권협정을 통해 합의되었던 ‘청구권/경제협력방식’이 북·일 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그간 한·일 회담이나 북·일 수교회담에서 보인 외교행태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재개될 회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서는 공개된 한·일 회담 외교문서의 분석을 통해 한국이 ‘청구권/경제협력방식’으로 과거청산문제를 타결 짓게 된 배경과 경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부분은 북·일간 과거청산관련 교섭에서도 한·일간 합의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어서 한·일 청구권교섭에서 한국의 청구권 대상에 북한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양국 간에 어떠한 논쟁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청구권 대상지역에 관한 논의는 한·일 기본관계조약 상의 관할권문제³⁷⁾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북·일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을 미리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한·일 회담에서 과거청산이 ‘청구권’으로 처리된 배경과 경위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한국이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일본으로부터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전쟁배상 등 전후처리문제를 다루는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회의에 직접 참가하여 국제적인 틀 속에서 식민지 피해배상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냉전구도가 형성되면서 한국의 계획은 좌절되고

37)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관할권문제에 관해서는 이원덕의 선행연구(2010)를 참고하기 바란다.

말았다. 당초 일본의 철저한 전쟁배상을 추구했던 미국은 공산세력의 확산 저지에 일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부흥을 돕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의 배상의무를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수정된 대일정책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피해배상을 원했던 한국의 입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것이다.³⁸⁾ 한국은 대안으로,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일본과 배상을 위한 양자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제4조 a항)³⁹⁾를 마련하였다. 이 근거에 따라 미국 주선으로 1951년 10월 한·일 회담이 시작되었다.

한·일 회담에서의 한국의 최초 교섭목표는 식민지 피해배상을 통한 과거청산이었다. 하지만 회담 준비과정에서 이 목표가 '청구권'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 이유는 우선, 한·일 회담의 개최근거가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a)항에 한국이 일본과 교섭할 대상이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청구권(property and claims including debts)'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 회담을 주선하고 회담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도 한국의 식민지 피해배상요구를 용인하지 않았다. 미국은 남한에서의 군정 당시 몰수한 구 일본재산을 1948년 9월 한국에 이양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감안하여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영토분리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 청구권만을 요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⁴⁰⁾

한국은 제1차 회담이 시작되자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8개 항목의 '대일청구권요강'을 일본 측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38) 유의상, 『13년 8개월의 대일협상』, 역사공간, 2016, p. 28.

39) 조약 제4조 a)항의 주요 내용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역의 일본과 일본국민의 재산 및 현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당국 및 주민들에 대한 청구권(채무 포함),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그 당국과 거주자들의 재산과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청구권(채무 포함)은 일본과 그 당국들의 특별협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40) 유의상(2016), pp. 129-133.

한국의 청구권주장을 상쇄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한국에 남겨두고 온 재산에 대한 역청구권을 주장하였다. 한국은, 앞서 기술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b)항을 근거로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교섭은 제3차 회담까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미국의 중재가 이어지고 자국민의 남한 내 재산에 대한 보상여력이 생기게 되자 일본은 비로소 역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재일한국인 복송문제로 공전을 거듭한 제4차 회담을 거쳐, 장면 정부의 제5차 회담부터 한국의 대일청구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섭은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가 부족한데다 세부항목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타결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경제개발자금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였던 박정희 정부의 제6차 회담에서 김종필-오히라 간에 일본이 제공할 자금의 액수와 제공방식에 대한 정치적 '일괄(lump-sum)타결'이 이루어졌다.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불, 유상차관 2억불, 상업차관 3억불 이상의 자금을 '경제협력방식'으로 제공키로 한 것이다.

양국은 '김-오히라 합의' 이후에도 일본이 제공하는 자금의 '명목'을 둘러싸고 2년 반에 걸쳐 줄다리기를 계속하였다. 한국은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반드시 '청구권자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¹⁾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축하하는 의미의 '경제협력자금'이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⁴²⁾ 양국은 호텔에서의 합숙교섭 끝에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41) 1962년 8월 24일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 배의환 수석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하였으며(한국외교문서철, 736),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도 1965년 8월 5일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한국 국회, 제52회 한일 간 조약과 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1965. 8. 5).

42) 1962년 8월-1963년 2월 개최된 정치회담 예비절충회의에서 일본 측은 이러한 입장을 계속 주장하였으며(한국외교문서철, 736, 737, 738, 747), 협정 체결 후 발간한 설명책자에도 동일한 입장이 명기되어있다(外務省·法務省·農林省 編, 『時の法令 別冊: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説』, 大藏省印刷局, 1966, p. 63).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양국의 주장이 모두 반영된 결과였다. 일본이 경제협력의 의미를 고집한 것은 식민지 지배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청구권자금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입장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은 당초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려 하였으나, 여러 제약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청구권/경제협력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한국과는 교섭여건이 전혀 다른 북한이 한국과의 정합성 때문에 일본의 주장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구애될 필요가 없고, 미국과 같은 외부세력의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북한은 그간 일본과의 수교회담에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의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물론, 앞장에서 기술한 대로 2002년 '평양선언'에서 일본의 경제협력 제의를 받아들인 했지만, 이 선언에는 경협이 명분이 빠져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06년 재개된 회담에서 경협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문제에 대해 경협 이외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국이 북·일 간 교섭재개를 앞두고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점이다.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관해서는 한국과 북한이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과거청산방식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북한의 주장, 즉 보상방식의 과거청산에 동조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할지, 아니면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간 정합성을 주장하는 일본 측에 힘을 실어줄지 선택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은 교섭의 결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마지막 장 '한국의 대응 전략'에서 논하고자 한다.

2. 한국의 대일청구권 대상에 북한지역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제

한국은 일본과의 청구권교섭에서 시종일관 대일청구권의 대상에 북한지역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부터 나온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교섭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한국은 제1차 한·일 회담에 앞서 1951년 11월 북한지대의 확정채권에 관한 신고를 추가조사의 대상으로 하여 처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수립함으로써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북한을 포함시켰다.⁴³⁾ 1953년 10월 13일 제3차 회담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 대표가 “미군정의 관할 밖에 있던 북한지역의 구 일본재산에 관해 북한이 한국의 관리하에 들어갈 경우 어찌할 것인가” 묻자, 김용식 대표는 “유엔결의에 대한 한국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고, 북한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한국정부가 갖고 있다”고 대응하였다.⁴⁴⁾ 1962년 3월 6일 제6차 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는 일본의 요시오카 에이치(吉岡英一) 대표가 한국의 대일청구권의 대상은 남한지역에 관한 것만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자, 한국의 김윤근 대표는 “일본 측은 한국의 대일청구권은 남한에 국한되는 것이냐고 말하였으나 평화조약의 해석으로도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중략) 한국의 채권은 남·북한 전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주장해 둔다”면서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였다.⁴⁵⁾ 그러나 이후 청구권교섭이 대일청구권의 8개 항목에 대한 개별교섭방식에서 ‘일괄(lump-sum)타결방식’으로 바뀌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청구권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43) 한국의외교문서철, 87, ‘북한지대의 확정채권처리에 관한 건, 1951. 11. 3’.

44) 한국의외교문서철, 95, ‘제3차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의 경과보고, 1953. 10. 13’.

45) 한국의외교문서철, 750, ‘제6차 한일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1차 회의 회의록, 1962. 3. 6’.

한편, 일본은 6.25전쟁이 진행 중이던 회담 초기에는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북한지역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1960년 12월 북한지역을 제외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후 지금까지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일 회담의 예비회담이 개최 중이던 1951년 11월 일본은, “북한당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정당한 정부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에 불과하며, 교전단체 이전의 존재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하였다. 그리고 이 입장에 따라, 1951년 12월부터 1952년 1월에 걸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일·한 화친조약’ 초안을 작성하면서 양국의 재산 및 청구권 상호포기 관련 조항에서 한국 측의 청구권대상지역에 북한을 포함시켰다.⁴⁶⁾ 6.25전쟁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화친조약은 하나의 조약에 한·일간의 기본관계, 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두 포함시켜 처리코자 한 것이었는데, 한국이 각 사안별로 별개의 교섭을 희망함에 따라 곧바로 폐기되었다. 이후 한·일 회담은 기본관계, 청구권, 어업,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화재 반환 등 5개의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이 진행되었고, 교섭 끝에 5개의 협정(기본관계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1952년 2월 12일 제1차 회담개최에 앞서 일본이 작성한 ‘일·한 회담 대처 근본 방침안’에는 한국의 대일청구권 주장에 대항하는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소재 구 일본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⁴⁷⁾ 그러나 회담에서는 남한 내 재산에 대한 청구권(역청구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둠에 따라 북한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제1차 회담이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으로 결렬되자 중재에 나선 미국이 1952년 4월 한·일 회담의 개최근거가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

46) 日本外交文書綴, 1835-1.

47)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編,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日韓國交正常化問題資料 基礎資料編 第6巻)』, 現代史料出版, 2011, p. 39.

조에 관해 “한국 내에 있는 일본과 일본국민의 재산은 모두 박탈되었다”⁴⁸⁾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해석으로 한국에 대한 역청구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일본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53년 10월 제3차 회담에서 북한지역에 있는 구 일본재산의 관리문제를 제기하였다.

1958년 4월 제4차 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명분상으로는 전 한반도에 걸친 문제를 한국정부와 교섭하는 것으로 하되, 대한민국정부의 지배가 북한에 미치지 않는 현실을 고려, 한국정부와 타결하는 제반 협정의 효력이 북한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한국과 교섭을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⁴⁹⁾ 이러한 입장변화는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차 회담 개최 당시만 해도 6.25전쟁은 종료되었으나 한반도 관련 정치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4년 반이 경과하여 제4차 회담이 개최될 무렵에는 이미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고 일본도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소재 일본재산을 한국에 대한 교섭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⁵⁰⁾

1960년 12월 제5차 회담 직후 한국의 정권교체로 한·일 회담 타결 가능성이 현실화 되어가고, 재일한인 복송 등으로 북한의 존재감이 커지자 일본은 다소 애매한 상태로 놔두었던 남·북한의 법적지위와 북한지역의 청구권문제 처리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48) 한국외교문서철, 86, ‘구 일본 및 일본인 재산처리에 관한 군정법령 및 대일강화 조약 중 의의 해명에 관한 건 (청구권조항해석에 관한 1952. 4. 29 미국무부 회한 송부의 건), 1952. 5. 6.’

49) 日本外交文書綴, 1536, ‘訓令()號,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全面會談における, 1958. 4.’

50) 유의상(『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2016), p. 237.

- **한국의 지위:** 조약의 상대국으로서의 한국정부의 지위는 1948년 국련 결의 195(III)의 내용에 따라 한반도에 수립되어 있는 유일한 합법정부이나, 그 실효적 지배와 관할은 남한부분에만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한다.
- **북한의 지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a)의 해석상 북한에 존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동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정권으로 해석한다.
- **재산 및 청구권:** 재산 및 청구권문제는 배상과 달리 본래 지역적 성격의 것이라는 입장에서 처리한다. (중략) 강화조약 제4조로 볼 때 한국이 처리할 수 있는 재산, 청구권의 대상은 남한부분에 한정해야 한다.⁵¹⁾이 내용은 인용자가 임의로 번역, 재정리한 것임.

한국의 관할권과 청구권대상은 남한부분에만 적용된다는 이 입장은 1962년 3월 6일 제5차 회담 청구권소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한국 측에 통보되었다. 한국이 이에 반발하였음은 앞에서 서술한 대로이다. 일본은 피 징용관계 전문가회의에서 피 징용 한국인의 미수금을 산정하면서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라 북한 지분 30%를 공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⁵²⁾ 그러나 후일 청구권문제가 양국 간에 정치적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됨에 따라 이 계산 역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일본외상은 1965년 10월 29일 중의원 한·일 조약 및 협정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청구권문제는 일본의 재

51) 日本外交文書綴, 1410, ‘日韓交渉における日本政府の立場に關する法律上の問題點, 1960. 12. 6’.

52) 대장성은 인구비례에 따라 남·북한 7:3, 외무성은 징용자 대부분이 남한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 95:5로 계산하였다(장박진, 『미완의 청산』, 역사공간, 2014, p. 746).

산청구권으로 한국의 실제 관할에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고, 또한 한국의 대일청구권 혹은 재산이라는 것은 명백히 전 한반도라고 쓰지 않고 한국 및 한국민이라고 쓰고 있다. 따라서 청구권의 문제에서 북한은 제외되어 있다”⁵³⁾라는 발언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문제 교섭에 있어서 북한요소를 둘러싸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이 대일청구권대상에 북한지역이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은 헌법의 영토조항과 당시 북한정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액수의 자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술적, 실리적 이유 또한 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70년대 이후 한국정부는 헌법에 영토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1973년 6월 23일),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2000년 6월 및 2007년 10월) 등을 통해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국은 또한, 1991년 북·일 수교회담이 개최된 이래 북한이나 일본에 대해 한국의 관할권이 북한에 미친다고 주장하거나, 북한의 대일청구권이 한국에 속해 있으므로 북한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다.⁵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한국의 청구권대상에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북·일 수교회담에서의 북한의 대일청구권문제(북한은 청구권이 아닌 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헌법상의 법리적 입장과 무관하게 북·일 간에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53) 日本 國會 50回 衆議院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関する特別委員會 會議錄 第6號, 1965. 10. 29.

54) 이원덕(2010), p. 227.

Ⅳ. 과거청산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일 수교회담 전망

1. 회담에 임하는 북·일 양국의 입장

북한은 앞으로 재개될 북·일 수교회담에서 여러 모로 일본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서 교섭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개방정책을 취하게 되면 한국을 필두로 중국과 서방국가들의 자본이 북한으로 대량 유입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더 이상 경제적인 압박에 의해 대일교섭을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또한, 과거 한국과 달리 외부 요소에 의한 제약과 간섭 없이 일본과 교섭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시작해야만 했고, 교섭 기간 내내 계속된 미국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 ‘영토분리에 따른 법적 재산 및 청구권’으로 과거청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이러한 속박이 없다.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는 ‘청구권/경제협력방식’을 통해 과거청산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북한으로서는 2005년 이후 공개된 한·일 회담기록이나,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간에 전개된 과거사문제관련 외교교섭 결과를 통해 일본의 교섭행태나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⁵⁵⁾ 특히, 2015년 한·일간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합의는, 일본이 청구권협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⁵⁶⁾에서 북한이 과거청산관련

55) 김용복(2006), p. 190; 전진호, 「6자회담과 북·일 교섭을 둘러싼 한·일 간의 협력과 갈등」,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4(0), 2006, pp. 81~82.

56) 일본정부는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慰安婦問題, 日韓合意 政府の責任認定・首相おわび 韓国が謝罪, 日本から10億円」, 『朝日新聞』, 2015.

교섭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국내여론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으나, 체제 특성상 북한은 여론 통제가 용이하므로 국내여론이 교섭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납치문제는 금후 회담에서 북·일 모두의 협상지렛대(leverage)로 활용될 수 있으나,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 측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일본은 한반도문제에서의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수교회담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그간 아베 총리가 국내적으로 ‘북한 위협론’을 강조하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해 온 만큼, 회담재개 추진은 헌법 개정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베로서는 북한 핵·미사일문제와 일본 인납치문제로 인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일본의 대북한 여론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1999년에 이미 “북·일 교섭의 최대장애가 일본의 국내여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⁵⁷⁾ 대북한 교섭 재개에 앞서 국내여론의 방향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일본은 북·일 회담이 재개되면 한국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의 우호관계나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조하겠지만, 아베 정권하에서 계속되어온 한국과의 과거사문제와 영토문제 갈등이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처럼 불리한 상황 속에서 대북한 교섭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2. 회담 전망

북·일 양국은 2006년 2월 ‘포괄병행협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국교정상

12. 29, 朝刊).

57) 김용복(2006), p. 183; 和田春樹, 「朝鮮有事」を防ぐ道, 『世界』1999(4).

화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및 일본인납치문제를 분리하여 교섭에 임한 바 있다. 재개될 수교회담에서도 이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핵·미사일문제와 납치문제가 제외된 수교회담에서는 과거청산문제가 교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양국은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일본이 북한에 제공하게 될 경제협력의 규모와 내용, 상호포기하게 될 청구권에 관한 구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북한의 최우선 교섭목표는 물론 일본이 제공할 경제협력 규모를 최대화하는데 맞추어질 것이다. 한·일간에 합의되었던 5억불(무상 3억불, 유상 2억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교섭의 기초가 되겠지만, 북한이 한때 전후 45년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 ‘α’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은, 평양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경협 의 명분과 관련하여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의 의미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교섭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⁵⁸⁾ 북한은 한국이 일본과 ‘청구권’으로 교섭을 하면서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강력히 비판해 온 만큼,⁵⁹⁾ 경협의 명분은 북한에게 규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구권 상호포기와 관련한 교섭에서는, 북한이 포기하게 될 청구권대상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등 개인청구권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제외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이 글의 제2장 및 3장에서 이미 서술한 대로 2006년 2월 제13차 회담에서 경협이외에 예외적인 문제에 대한 별도보상을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교섭을 이끌어나감으로써 북한은 한국보다 우월한 협상을 했다는 점과, 북·일 간에는 과거청산이 완결되

58) 박창건(2015), p. 47; 김용복(2006), p. 190.

59) 북한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식민지배의 약탈성에 대한 조선인민의 막대한 재산청구권을 일본정부가 경제협력의 레테르를 붙여서 박정희 일당에게 얼마간의 금전을 던져 줌으로써 흥정을 끝내버렸다”고 일본을 비판하였다. 조선대학교, 「북한의 대일재산청구권협정에 대한 입장」, 『매국적 한·일 조약은 무효다』, 1965이원덕 (2010), p. 214에서 재인용.

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북한에 제공할 대규모 경제협력을 카드로 삼아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자 할 것이다.⁶⁰⁾ 경험방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구축된 한·일간 '65년 체제' 및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전후처리방식(자본재 및 용역 제공을 통한 무·유상 경제협력)과의 정합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은 경제협력의 명분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보상 또는 과거청산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한·일 협정 체결 후 한·일간에 발생한 과거사관련 갈등이 북·일간에도 재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북한과 체결하는 협정에는 철저한 보장 장치, 예를 들면 해결되는 과거사관련 사안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안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교섭여건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청산문제를 둘러싼 양국입장이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이나 미국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교섭이 순조롭게 타결된다면, 그간의 교섭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북·일 양국은 한·일 회담과 유사하게 ① 기본관계조약(북한은 제5차 회담에서 '선린우호조약안'을 제시한 바 있음), ② 경제협력(과거청산)에 관한 협정, ③ 어업협정, ④ 재일조선인 지위에 관한 협정, ⑤ 문화재 반환 협정 등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교정상화 방식 또한 한·일 간 예와 같이 모든 협정 체결 후 국교를 정상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북한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하루속히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원하고 있고, 일본도 한반도문제에서의 소외를 원치 않고 있다는 점에서, 타결이 쉽지 않은 다른 안건 교섭은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기본관계조약만의 체결을 통한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1991

60) 「北朝鮮外交 日本は柔軟に機を探れ」(社説), 『朝日新聞』, 2018. 4. 12, 朝刊.

년 5월 개최된 제3차 회담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 바 있다.

V.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은 과거 대부분의 정부에서 북·일 관계가 남·북한 관계보다 앞서 나갈 경우 이를 견제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1991년 1월 북·일 수교 교섭의 개시를 앞두고 방한한 가이후 일본 총리에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북·일 관계개선이 남·북 대화의 진전에 맞추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 후 북·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이 북한에 대해 쌀을 지원하려 하자 이를 견제하고, 한국이 먼저 지원하기도 하였다.⁶¹⁾ 또한, 1995년 11월에는 일본에게 '북·일 수교 3원칙'(① 일·북 관계는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② 한·일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③ 수교이전에는 대북 경제지원 불가)을 제시하며 북·일 관계의 속도조절을 요구한 바 있다.⁶²⁾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을 기조로 삼으면서 북한과 정상회담까지 개최 하였던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중재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⁶³⁾ 북·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간 정상회담의 중재역할을 자임해온 현 한국정부도, 북·일 관계개선이 남·북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 하에 일본의 대북관계개선을 장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9일 전화통화에서 아베 총리에게 기꺼이 북·일 사이의 교

61) 「한일, 대북 쌀 추가지원 연계」, 『동아일보』, 1995. 8. 20.

62) 외교부(2015), p. 76.

63) 朝日新聞은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은 김대중 대통령의 중재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韓国大統領、金総書記動かす? 書簡や特使を通じて説得 首相訪朝へ」, 『朝日新聞』, 2002. 8. 31, 朝刊).

량역할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⁶⁴⁾

이렇듯 한국이 협조하는 가운데 북·일 수교회담이 재개되면, 한국 정부에게는 역설적으로 일본과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난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로서는 과거사문제 해결을 우선시 할지, 아니면 한·일 관계를 우선시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일 관계의 훼손을 무릅쓰고 과거사문제 해결을 우선시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북한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대일교섭에서 한국보다 나은 과거청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은 추후 북·일 간 합의내용을 토대로 일본에게 과거청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면 된다. 북·일 합의는 한반도가 통일되어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될 때 과거청산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

남·북 대화와 북·일 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인 1992년 6월 20일,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한국의 정원식 총리에게 서한으로 고위급 회담의 협력교류분과위원회에서 (일제의 왜곡된 역사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 및 조약무효화 선언 등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다. 북한의 전영을 조선역사학회장은 6월 24일 한국의 안병우 역사연구회장에게 “일제의 침략과 강점을 공동으로 재확인하고 왜곡된 과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남·북 역사학자회담 개최도 제의하였다.⁶⁵⁾ 이러한 북한 측 제의에 대해, 한국의 정원식 총리는 6월 25일 ‘을사조약과 정미7조약의 날조사실 규명 및 항일의병 독립운동 공동조사를 위한 남·북 역사학자간 학술회의’ 개최를 역 제안하였다. 당시 공동결의문 채택이나 역사학자회담은 모두 성사되지는 않았다.⁶⁶⁾ 한·일간 가장 침체하게

64) 「청와대, 한미·한일 정상통화 브리핑」, 『연합뉴스 TV』, 2018. 4. 29 (http://www.yonhapnewstv.co.kr/M_YH20180429005600038/?did=1825m, 2018. 4. 30 검색).

65) 「북 역사연구회장 일제 침략사 왜곡 대처 남북사학자 회담 제의」, 『동아일보』, 1992. 6. 25.

대립해 온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 소통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1992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와 1993년 11월의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한국대표단이 참석하여 북한 측과 '위안부'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하였다.⁶⁷⁾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북한 간에 현재와 같은 대화와 협력의 기초가 유지되면서 상호 신뢰가 보다 공고해진다면 과거 사문제와 관련한 공조는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남·북한 공조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우선 과거에도 추진된 적이 있는 과거사관련 공동학술회의 개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회의가 개최된다면 단순한 학술교류차원을 넘어 양측이 대일교섭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함께 분석한 뒤, 북한 측이 회의결과를 과거사문제에 관한 대일 교섭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남·북한 당국자와 학자들이 공동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북한의 대일교섭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법적적, 외교적 타당성 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한·일 관계에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선택지를 찾는다면, 북·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일본이 한반도 전체에 대하여 식민지배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북한, 일본 3개국이 정상회담 개최 후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형식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일본이 과거에 이미 한국이나 북한에게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이 방안을 받아들이는 데는 큰 저항이 없을 것

66) 「남북역사학자회담 물거품」, 『한겨레신문』, 1992. 7. 23; 朝鮮問題研究所, 「日朝鮮と日本との不法条約問題に関して対日共同対応を提案する - 延亨黙総理が南側総理に送る書簡」, 『月刊朝鮮資料』, 1992(8).

67) 「남북한 함께 일제피해 논의」, 『한겨레신문』, 1993. 11. 14.

으로 생각된다. 다만, 한국정부가 이 선언을 국내에서 과거청산을 위한
기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언에는 한국의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이 요구
하는 일본정부의 책임인정과 사죄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야 한다.

과거청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나, 북·일 수교이후 일본의 경제협력
실시에 따른 무, 유상 자금(현금이 아닌 자본재나 용역의 제공이 될 것으
로 예상되지만)의 북한 유입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경제협력이 시작되
더라도 일본이 북한시장을 선점하거나 북한경제가 일본에 예속되지 않도
록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간에 충분한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북한을 위해 과거에 한국의 경제개발과 외자도입에 대한 자문
및 회원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체로 1966~1984년간 설치되었던 '대한
국제경제협의체(IECOK: 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Korea)⁶⁸⁾와 유사한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이 기구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巨本空圖**

논문 투고일 : 2018년 5월 10일

논문 심사일 : 2018년 6월 12일

게재 확정일 : 2018년 6월 12일

68)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11개국이 이 국제기구에 참가하였다. 「대한국제경
제협의체 IECOK 18년 만에 해체」, 『매일경제신문』, 1984. 7. 16.

참고문헌

〈언론(인터넷 언론 포함) 및 정기간행물〉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연합뉴스 TV』,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朝日新聞』, 『月刊朝鮮資料』(朝鮮問題研究所), 『産經新聞』.

〈외교문서〉

한국외교문서, 86, 87, 95, 736, 737, 738, 747, 750, 1568,
日本外交文書, 1410, 1536, 1835-1.

〈단행본〉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 회담』, 서울: 중앙일보사, 1986.
외교부, 『일본개항 2015』, 서울: 나무와 숲, 2015.
유의상,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서울: 역사공간, 2016.
유의상, 『13년 8개월의 대일협상』, 역사공간, 2016.
장박진, 『미완의 청산』, 서울: 역사공간, 2014.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編,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日韓國交正常化問題資料 基礎資料編 第6巻)』, 現代史料出版, 2011.
外務省·法務省·農林省編, 『時の法令 別冊: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説』, 大藏省印刷局, 1966.
朴正鎮, 『日朝冷戰構造の誕生 1945-1965 封印された外交史』, 平凡社, 2012.

〈논문〉

권태환,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협상 동향」,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1(0), 2003.
김용복, 「한·일 회담의 경험과 북·일 수교회담의 전망: 공개된 한·일 협상 자료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11, 2006.
김태운, 「북한의 대일정책 변천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7(2), 2004.
박정진, 「북·일 관계의 구조와 변화전망 -65년 질서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연구학회,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2(0), 2015.

- 박정진, 「북·일 스톡홀름 합의 재론: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19, 2016.
- 박창건,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북·일 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 '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외교교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KWP』 31(2), 2015.
- 서동만, 「한·일 기본조약과 '조·일 수교교섭'의 상관관계」, 장달중·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편, 『한일공동연구총서 7』, 서울: 아연출판부, 2004. pp. 117~141.
- 이기완, 「김정은 정권의 대일 접근과 북·일 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19(2), 2016.
- 이원덕, 「북·일 수교 전망과 주요현안」,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2002.
- 이원덕, 「한·일 기본조약과 북한문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2), 2010.
- 전진호, 「6자회담과 북·일 교섭을 둘러싼 한·일간의 협력과 갈등」,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4(0), 2006.
- 遠藤哲也, 「日朝關係と國交正常化問題の現状と展望」, 聖學院大學總合研究所, 『聖學院大學總合研究所紀要』 53, 2012.
- 和田春樹, “朝鮮有事を防ぐ道”, 『世界』 1999(4).
- UCLA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Treaty of Peace with Japan, Sept 8, 1951”, *East Asian Studies Documents*.

〈기타〉

- 대한민국국회, 『국회회의록 시스템』(온라인).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2005.8.26.
- 日本國會, 『國會會議錄システム』(온라인).
- 日本 外務省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
-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 홈페이지(<http://www.rachi.go.jp/>).

Abstract

Forecast on N.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S. Korea's Corresponding Strategy: Focusing on the Settlement of Past History Issues

Euy Sang Yoo

N.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re likely to reopen due to the change of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ey agenda at the forthcoming talks will be how to settle the issues caused by Japanese colonial rule. They agreed basically, in conformity with S. Korea and Japan's agreement of 1965, at the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02 that Japan expressed apology for the colonial rule and would provide N. Korea with economic cooperation, while waiving the right of property and claims mutually. Remaining task is to decide the amount and purpose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iscuss about how to handle the personal right of claim of the victims including 'comfort women.' N. Korea-Japan Talks will reignite demand in S. Korea for the settlement of the unresolved past history issues. S. Korea should support N. Korea for the better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issues, so that it will serve as a guideline between S. Korea and Japan, or pursue a Summit among South and North Korea and Japan, and make a joint communique which contains Japan's sincere apology for its colonial rule toward the people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Key words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South Korea-Japan Claims Negotiation, Japanese Colonial Rule, Japan's Economic Cooperation to North Korea, Conformity of the agreement between S. Korea-Japan and N. Korea-Japan.